

「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(2004.10.22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4. 10. 4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4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42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요지(녹지공원과장 허형형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인용조문 정비 :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 ⇒ 지방세법 제9조의2

다. 법적근거

- 도시공원법 제6조 및 제8조, 제14조, 제15조
- 지방세법 제9조의2(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동 조례(안)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(점·사용료의 감면)의 「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」를 「지방세법 제9조의2」로 개정하는 조례(안)으로
- 그동안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23조는 1994. 12. 22자로 삭제되고 같은 법 제206조(세액의 계산 및 안분)는 동 조례 제3조(점·사용료의 감면)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에 맞지 않아 지방세법 제9조의2(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)로 개정하여 공원의 부지 등의 점·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
- 입법절차 및 체계 상위법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전원찬성)

7. 소수의견 : 없음